제4회 원규심의위원회 2015. 10. 22.(목)

# 심 의 안 건

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

# 순 서

1.	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	1
2.	운영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	4
3.	내부감사규칙 일부개정(안)	6
4.	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(안)	8

##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[안]

### 1. 의결주문

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### 2. 제안사유

○ 공무원행동강령 및 서울시 징계규칙에 부합하도록 강화된 징계양정 세부기준 및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징계양정세부기준 및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
  - ※ 신규 징계양정기준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입찰비리 및 불공정 행위	없음	신설
채용비리 연루	없음	신설
직무 및 대가, 수수금액을 불물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	없음	신설

### 4시행일

### <별표 1-1> 징계양정 세부기준

	현	행								개 정	(	안)					
징 계 기 준						징계기준											
구 분	징계 사유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	비고	구 분	징 계 사 유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	비고
1. 복무 및 품위	5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								1. 복무 및 품위	5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							
	가.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						0			가.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						0	
	나.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 에 영향을 주는 행위						0			나.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 에 영향을 주는 행위	성					0	
	다.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 반행위						0			다.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반행위	위					0	
	라.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0			라.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 위반행위	7					0	
	마.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, 부동산 임차금 지 의무 위반행위						0		마. 직무관런자로부터 금전 차용, 부동산 임치 지 의무 위반행위	금					0		
	바.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0			바.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형	위					0	
	사.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						0			사.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	4					0	
	아.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			-			0			아.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위반행위	등					0	
	자.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		0							자.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		0					
	차.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						0			차.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						0	
	<신 설>									카. 입찰비리 및 불공정 행위				<u>O</u>			발생시 전보조치
	6. 감사거부 및 방해									6. 감사거부 및 방해							
	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						0			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<i>7</i> 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	부					0	
	<신 설>									7. 인사비리							
	<신 설>									가. 채용비리 연루	0						비위채용자는 응시자격 박탈

### <별표 1-2> 청렴의무위반징계양정기준

현 행							개 정 (안)						
징계사유		징계 기		기 준		비고	 	징 계 기 준					비고
78 71 77 11	파면	해암상	정확상	감봉이상	견책상	1 11/12	78 /11 /1 11		해암상	정작이상	감봉이상	견책상	- H <u>[]/-</u>
2. 금품・항응수수 등 가: 작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항응 등수수 (1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 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 (4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(5) 500만원 이상 나: 작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항응 등을 수수하고, 위법・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(1) 100만원 미만(수동) (2) 100만원 미만(수동) 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(4) 300만원 이상 다: 작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항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・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(1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미만 (3) 100만원 이상 라 작무와관련하여 금품이나 항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・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(1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이상 라 위법・부당한업무리 충구로 금품증가행위 마 작무관련 정보세공 등 업무관의 조건으로 금품증 개행위	0	0 0	0 0	0		1. 100만원 마만의 금품 향응 요구, 정기·싱습 수뢰· 알선시: 해암·상 2. 고의•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기감	2. 금품・항응수수 등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항응 등수수 (1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 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 (4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(5) 500만원 이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항응 등을 수수하고, 위법・부분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(1) 100만원 미만(수동) (2) 100만원 미만(수동) 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(4) 300만원 이상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항응 등을 수수하고, 위법・부분한 처분을 한 경우 (1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이상 라 위법・부분한 처분을 한 경우 (1) 100만원 미만 (2) 100만원 이상 라 위법・부분한 업무리 조건으로 금품증 개행위	0	0 0	0	0		1. 100만원 마반의 금품 항응 요구, 장가상습 수롸 알선시: 해와상 2. 고의•과실 및 바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기감
〈 신 설〉							3. 작무및대), <del>수금액을 불</del> 당한고 금품을 수수 한경우				<u>o</u>		

### 심의안건 2

## 운영위원회운영규칙 개정(안)

### 1. 의결주문

서울연구원 운영위원회운영규칙 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#### 2. 제안사유

○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연구원 현행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○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인원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고자 함.

#### 4. 시행일

현 행	개 정 안
	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### 심의안건 3

### 내부감사규칙 일부개정[안]

### 1. 의결주문

내부감사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### 2. 제안사유

○ 반부패·청렴업무 관련하여 감사관으로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.

### 3. 주요내용

○ 내부감사규칙 제3조(감사구분)에 외부인 감사관 임명 규정 신설.

### 4시행일

현	행	개 정 안
제3조(감사구분)		제3조(감사구분)
① ~ ④ (생략)	< 신 설 >	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원장은 필요할 경우 반부패 청렴업무에 외부인을 감사관으로
		임명할 수 있다.

### 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[안]

### 1. 의결주문

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### 2. 제안사유

○ 공용차량의 용도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연구원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차종별 용도지정 일부개정
- '차량을 이용한 출·퇴근 허용' 신설

### 4. 시 행 일

현	행		개	정	안			
제3조(차량의 구분)	① (생략)	제3조(차량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						
② 차량의 <u>차종·</u> 기준은 <별표1> <sup>3</sup>	<u>차형</u> 및 최단운행 과 같다.				• <b>용도</b> •차형 별표1>과 같다			
<별표1>		<별표]	1>					
차종별 차형	및 내구연한		차종별 🧦	차형 및	Ų 내구연한			
<u>차 종</u> 차 형	내 구 연 한	차 종 ( <b>용 도</b> )	차	형	내 구 연 한			
<u>승 용</u> (업무용) 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승용 (전 용)	대형승용	를 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 8년 12만km이상	터		
중・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	승용 (신유)	중・소형승	능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	터		
(업무용) 승합승용차	8년12만km이상	(업무용)	승합승용	子.차	8년12만km이상			
제3장 차량관리 및 등		제14조 허용 용차	) 원장( 량에 I	량을 은 연 <sup>-</sup> 대해	·행 이용한 출·퇴 구원 차량 중 출·퇴근용으 허용할 수 있	전 .로		